

법률 제 호

도서관법개정법률안

도서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교양·조사·연구 및 교육·문화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5.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을 말한다.

6.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가 그 소속원이거나 신체장애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학습·교양·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학도서관등의 이용제공) ①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시설·자료)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발전위원회)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서관진흥기금) ①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제11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세감면) ①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1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도서관협회) ① 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자료교

환 및 업무협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국제도서관단체와의 상호협력, 기타 도서관직원의 자질향상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도서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5조(국립중앙도서관) ① 문교부장관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할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7.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8. 사서직원의 연수
9.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한다.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납본의 절차·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도서관

제19조(설립) 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업무)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5.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도서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자들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② 공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교육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감독 등) ① 시·군교육장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시정명령) 시·군 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정관명령) 시·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 ①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군교육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도서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다.

제29조(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입관료)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도서관

제32조(설치)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5. 기타 대학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4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5장 학교도서관

제35조(설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기타 학교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7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제38조(설립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정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별 자료확보 및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중에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군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감독 등) ① 시·군교육장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교부장관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 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도서관정보협력망

제41조(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① 정부는 정보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결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화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3.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제42조(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망의 각급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3. 협력망 운영의 통할

제43조(지역대표관) ① 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공공도서관중에서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지역협력망의 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지원·협력) 협력망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 제46조(벌금) 제27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을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당해 발행 자료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